

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,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10일

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

1. 용역사업 집행계획

용역명	하남일반산단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(운영시)		
용역내용	하남산단내 A=4,969천㎡ 사후환경영향조사(운영시) 1식		
용역기간	착수일로부터 36개월		
계약방법	장기계속계약(1차분 : 착수일~6개월 / 150,000,000원)		
시행기관	전남광주통합특별시		
입찰예정시기	2026. 8월 중		
기초금액 (A=B+C)	추정가격 (B)	부가가치세 (C)	비고
1,159,500,000원	1,054,090,909원	105,409,091원	손해배상공제료 포함

※ 우리 시 예산 사정에 따라 금액이나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2.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
가.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업체

※ 사업책임자는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68조 제2항 [별표5]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로 배치하여야 함

3.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“2. 가.”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**단독 또는 공동도급(공동이행 방식)**으로 참여 가능합니다.
- ※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% 이상이어야 함
 - ※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됨
 - ※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업종별 분담비율과 동일해야 하며, 분담으로 참여한 업체는 사업 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나,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
- 나. **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**하고,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,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.
- 다.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, **지역업체 참여도**는 ‘[전남광주통합특별시](#)’에 주된 영업소(본점)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)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.
- 라. 지역업체로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(공동 구성원 모두)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부터 입찰일까지,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- 마.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.

4.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평가자료 제출 안내

제출일시	제출장소	제출방법
2026. 8. 25.(화) 14:00~17:00	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토목3팀(5층)	직접제출 (우편, 이메일, 팩스접수 불가)

※ 제출주소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로 149 토목부 토목3팀(5층)/ ☎ 062-613-6939)

가. 작성기준(안내서) 교부 : 국가종합전자조달(나라장터 홈페이지)

나. 제출서류

- 1) 참가등록신청서 1부
- 2) 사업자등록증 사본(원본대조필)
- 3) 법인등기부등본, (법인)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(사용인감 도장)
- 4) 공동수급체 구성 시 : 공동수급 표준협정서(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)
- 5) 대리인 참석시 :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(신분증 지참)
- 6) 참가자격 면허 사본(환경영향평가업자 등)
- 7) 사업수행능력평가서 : 1부(원본 상·하권), 신청공문 포함

- 8)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5부 별권 제출(1부 : 회사명 기재, 4부 :회사명 미기재)
- 9) 참여자 경력 및 실적 작성자료, 업무여유도,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 작성자료(파일 1부)는 평가서 접수 당일 17:00까지 E-mail 제출
 ※ E-mail : wsx3673@korea.kr
 ※ 업무여유도 자료 공개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(구)광주광역시 홈페이지
 [www.gwangju.go.kr 시정소식-직속기관/사업소소식-종합건설본부]
- 10)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1개(USB)

다.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

- 1) **2026. 8. 14.(금) 17:00까지** 참여업체 회사대표자 명의의 서면질의서(서식 20) 제출분 (E-mail : wsx3673@korea.kr)만 인정하며, 질의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(☎062-613-6939) 하시기 바랍니다.
 (질의 및 접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서에는 응하지 않음)
- 2) 답변내용과 당초 배부한 평가안내서 중 추가 또는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 일괄 작성하여 인터넷 전남광주통합특별시(구)광주광역시 홈페이지[www.gwangju.go.kr 시정소식-직속기관/사업소소식-종합건설본부]에 **2026. 8. 21(금)에 게시**하겠으니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라며, 이 기간 이후 추가 질의 또는 건의, 의견 등에 대하여는 일체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 (업체별로 통보하지 않으며 개별 방문도 받지 않음)

5.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

가. 입찰참가대상자 선정

- 1)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제42조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5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7 및 「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) 제2025-91호, 2025. 12. 31.)」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」에 의거 작성한 평가기준에 따라 **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일정점수(87.50점) 이상 득점한 업체**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. 다만, 우리 시에서 정한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.

나. 낙찰자 결정

- 1)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2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」(행안부 예규) **제2장의2 기술·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'별표 1] 1.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.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'**에 따라 결정합니다.
 ※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**배점한도(1점)를 부여**합니다.
 ※ **경영상태** 평가는 P.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**배점한도(2점)를 부여**합니다.
- 2) 입찰 참가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하며,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.

6. 기타사항

- 가. 사용언어는 「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」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나. 평가자료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, 조회 결과 허위 또는 위·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- 다.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(위임장, 재직증명서 제출)는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
- 라. 평가자료는 제출 마감기한 이후 추가 제출할 수 없으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마.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, 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합니다.
- 바. 평가결과는 개별통보(총점)하고,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,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- 사. 입찰자는 반드시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, 「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」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- 아.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발생할 경우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.
- 자.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토목3팀(☎ 062-613-6939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